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3155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

I. 개요

1.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15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23.

(3) 회 부 일 : 2024. 8.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개별 급여가 도입되고, 이후 교육·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노인·장애인 가구·한부모가구 등 취약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제도가 개선되었음.

하지만, 여전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으며, 소득은 낮지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2021년 기준 66만 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음.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도 중장기 검토 계획임을 밝혔음.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족 간 부양이 공공부조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가족 부양 우선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

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 및 부양 거부 등의 이유로 인해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 중 하나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고 급여가 결정된 경우 수급권자가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8조의2 삭제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권자 결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급여 실시 여부 및 내용에 대한 결정 요지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 11. (생략)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u><삭제></u> 6. ~ 11. (현행과 같음)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생략) ② <u>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u>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다른</u> ----- ----- -----.

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생 략)

②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③·④ (생 략)

제8조의2(부양능력 등)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

-----.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득인정액-----

-----.

③·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4.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제32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6.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7.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8.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

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
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에는 제8
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
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교육급여) ①·② (생
략)

③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
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
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급여 선정기
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④ (생략)

제12조의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교육
급여와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
의 연계·통합을 위하여 제3조
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도 불

제12조(교육급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급권자는 소득
인정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제3조제
2항에도-----

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

제12조의3(의료급여) ① (생략)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③ (생략)

제21조(급여의 신청)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신청을 할 때나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신청을 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

제12조의3(의료급여)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

-----.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급여의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수급권자-----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④ ~ ⑦ (생략)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3.·4.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

-----.

<삭 제>

2. 수급권자-----

3.·4. (현행과 같음)

② -----
-----수급권자-----

-----수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조사를 관계 기관에 위촉하거나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고용주,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⑧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제출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⑨ (생략)

제23조(확인조사) ①·② (생략)

③ 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

급권자-----
-----.

③ -----

----수급권자-----

-----.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수급권자-----

-----.

⑨ (현행과 같음)

제23조(확인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급자-----

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
-----.

제23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수급
권자-----

-----.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 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제25조(조사 결과의 보고 등)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 무자 및 차상위계층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조사하였을

② -----

-----수급자-----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조사 결과의 보고 등) ---

-----수급자 및-----

-----.

제26조(급여의 결정 등) ①·②
(생략)

④ 신청인에 대한 제3항의 통지는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2.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22조제1항·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illegible]

④

2. 수급권자가-----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하는 경우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14조
에 따른 장제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
가 없을 때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遺留)
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
할 수 있다.

제46조(비용의 징수) ① 수급자에
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
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
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
하여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

-----1촌의 직계
혈족이나 그 배우자(사망한 1
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
외한다)-----

-----.

제46조(비용의 징수)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부정수급자에게-----
-----부정수급자가-----

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
--	----------------------------

나. 검토의견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급여는 i)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소득인정액 기준), ii) 부양의무자¹⁾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2가지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생계급여 등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고 있음.²⁾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구 분		내 용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생계급여]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의료급여]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 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③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④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³⁾

□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하는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부양의무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와 수급자로 인정되더라도 부양비만큼 현금급여에서 차감⁴⁾되어 수급자의 실제 수급액이 감소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⁵⁾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66만명의 비수급 빈곤층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부양능력 등)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4.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제32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6.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7.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8.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③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4)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함.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 비수급 빈곤층 변화 >

구분	'03년 기준 1차조사	'06년 기준 2차조사	'10년 기준 3차조사	'14년 기준 4차조사	'15년 기준 5차조사	'18년 기준 6차조사	'21년 기준 7차조사
비수급 빈곤층	177만명	103만명	117만명	118만명 (중위소득 40% 이하)	93만명	73만명	66만명
차상위계층 기준 비수급 빈곤층	86만명	67만명	68만명	85만명 (중위소득 40~50% 이하)	51만명	59만명	59만명
차상위계층 포함 비수급 빈곤층	263만명	170만명	185만명	203만명	144만명	132만명	125만명

자료: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에 부양의무자 범위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바,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각각 2015년, 2018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의 경우 2019년에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시키고, 2021년에는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음.

- 다만,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원이 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되었고, 2025년부터 연 소득 1.3억원 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완화되었음.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 연혁 >

구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내용
17.11월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소위 '老 - 老 부양, 障 - 障 부양'인 경우
19.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는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도 기준 적용 제외 ▶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및 보호종결아동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1.10월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자료 : 보건복지부

□ 부양의무자 기준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국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로 도움이 필요함에도 생계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복지취약계층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은 이러한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더욱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가 수급자가 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라는 국민 정서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가족 간 재산 이전이나 가구 분리를 통해 수급자로 인정받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⁶⁾

□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병원

6) 경상남도 거창군, 경기도 여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울산광역시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음.

입원이 무료이고 외래 진료는 1,000원에서 2,000원의 본인부담금만을 내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확대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 생계급여 80.4억 원(2,595가구), 의료급여 2.2조원(28만 가구) 등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이에 대해서는 우선, 저소득층 의료지원 제도를 현행과 같이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할 것인지, 개정안과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정부 재정인 ‘의료급여’를 통해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혜 대상자, 정부의 재정 운용 효율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⁷⁾

- 저소득층 의료지원 제도 중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 상한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지원, 산정특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등이 있고, 의료급여에는 희귀·중증질환자, 임산부 등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건강생활유지비⁸⁾ 지급 및 본인부담 보상·상한제 운영 등이 있음.

□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급여 실시 여부 및 급여 내용을 결정한 경우에 결정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통지서가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송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7) p.23~24 참고 1, 2 참조.

8)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용도로 월 6천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환급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여 결정의 요지 등에 대하여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한 후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급여 결정 내용 등에 관한 수급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 보건복지부는 전화, 우편이나 대면 등의 확인절차가 추가로 마련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⁹⁾, 수급권자도 확인절차를 받기까지 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등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다만, 수급권자의 거소 불명 또는 연락처 불명 등으로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수령확인을 위하여 지속적인 소재 파악을 위한 행정력 소모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8조¹⁰⁾에 따른 90일이라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만일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의가 제기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경기도 여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의 확인절차로 인하여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을 표한 바 있음.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시·도지사에게 대한 이의신청) ①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신중 검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조항을 완전 삭제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기본원칙¹¹⁾,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꾸준히 완화해오고 있고,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경우 반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제도 운영 중(18년~)이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부양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하여 보장 가능함.

□ (기획재정부: 수용 곤란)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는 ①도덕적 해이 가능성, ②해외 사례, ③막대한 재정소요 등을 감안 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제도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 중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7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참고1

제도 비교(의료급여, 건강보험)

구 분	의료급여	건강보험
대상자	1,517,041명('23년 12월 말 기준) (1종) 1,169,131명, (2종) 347,910명	51,453,055명('23.12월 말 기준)
재 원	11조 8,192억원('23년 기준)	94조 9,113억원('23년 기준)
재원조달	○ 조세(국고+지방비) - 국 고 : 9조 623억원 - 지방비 : 2조 7,569억원	○ 보험료(일부 국고) - 보 험 료 : 81조 5,180억원 - 국고지원 : 9조 1,494억원 - 담배부담금 : 1조 8,208억원 - 기 타 : 2조 4,231억원
자격증명	○ 의료급여증, 기타 신분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자격구분	- 1종 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기초생활수급자,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북한 이탈주민, 5.18민주화유공자) · 산정특례 등록자(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만 해당)) ·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노숙인 - 2종 수급권자 :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급여수준	○ 건강보험 준용/영안실 안치료 별도 급여	○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입원 등
수가기준	○ 건강보험 준용(포괄수가 제외) ○ 정액수가: 요양병원, 보건기관 (정신과입원, 혈액투석외래)	○ 행위별 수가 ○ 포괄수가(7개 질병군) ○ 정액수가: 요양병원, 보건기관
본인부담금	○ 입원: 1종 0원, 2종 10% ○ 외래 - (1종)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 (2종) 1차: 1,000원 2차: 15% 3차: 15% ○ 약국 : 500원(보건소제외), 다만, 100개 경증질환 중병이상 처방전 3%	○ 입원: 20% ○ 외래 - 의원급 이하: 30% - 병원급: 35%, 40% - 종합병원급: 45%, 50% - 상급종합병원: 60% ○ 약국: 30~50% -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병·의원 3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 50%)
급여절차	○ 3단계(의원→병원·종합→상급종합병원) * 예외 : 노숙인(2단계)	○ 2단계(의원, 병원, 종합→상급종합병원)
운영기관	○ 복지부 - 시·도 - 시·군·구(보장기관) ○ 업무위탁 - 지급 : 건강보험공단 - 심사 : 심사평가원	○ 복지부 - 건강보험공단(보험자)

참고2

건강보험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지원사업 현황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기존의 차상위 의료급여는 '08-09년에 걸쳐 건강보험제도로 편입하여 **28.8만 명*** 지원 중('23.12월 기준)

* 노인 등 만성질환자(16.4만 명), 희귀난치질환자(3.2만 명), 18세 미만 미성년자(9.2만 명)

-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본인부담액은 일반가입자의 1/6~1/2 수준이며, 의료급여와 유사한 본인부담율 적용 중

< 본인부담 비교 : 건보 차상위 vs 의료급여 >

구 분	건강보험 차상위 지원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입원·외래 면제	산정특례 등록시 입원·외래 면제
만성질환 18세 미만	입원 14% 외래 1,000원 ~ 14%	(1종) 입원 면제, 외래 1~2천원 (2종) 입원 10%, 외래 1천원 ~ 15%

□ 본인부담 상한제

- 본인부담 상한액*은 1분위 연간 87만 원('23년 기준)으로, 의료급여 2종(연간 80만원)과 유사한 수준

* 고액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상한금액을 정하고 1년 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해당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차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재난적의료비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제도*는 연간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선별 급여 및 비급여를 중심으로 의료비 부담액의 50~80%를 지원

* 가구 소득대비 고액 의료비 발생 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빈곤위험 방지를 위해 본인부담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대상자에 포함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200%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심사 통해 지원